#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주요 현안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 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41명), 운전면허 정지(39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4.1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11

**“ 이제 가족친화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
- 21일부터,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4.1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19

**“ "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피해자인데"… 2명중 1명만 가정폭력 인식 ”**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3.04.23.]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118600530?input=1195m

**“ 가정의 달 5월, 우리동네 가족센터에 가볼까? ”**
- 전국 가족센터, 온 가족이 참여하는 8백여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4.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jX2v7ny9kApHYo1zCTT8Df5.mogef10?mid=news405&bbtSn=709231

**“ 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 "가족 지원 확대·이민 정책 병행해야" ”**

[뉴스핌, 윤채영 기자, ‘23.04.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5000587

**“ 우울감 느끼는 가족돌봄청년, 일반청년보다 7배 많다 ”**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3.04.26.]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069100530?input=1195m

**“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4.2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6AEWONFIdM1HAhLuspjENDPd.mogef21?mid=news405&bbtSn=709241

**“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2위는 중국” ”**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 ‘23.05.0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02/119094300/1

**“ 1인 가구,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
-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확대 지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 신규 도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0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53

**“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고 로고송도 따라부르며 온라인 참여행사에 도전하세요! ”**
- ‘우리 가족 사랑해!’ & ‘든든한 도전잇기(챌린지) : 로고송 따라부르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행사 진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0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56

**“ "누가 혼자 키우라 했나" 편견·생계 이중고 한부모 151만 ”**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23.05.07.]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6025400004

**“ 양육·돌봄 등 분야별 한부모가족 서비스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정보 접근성 향상 목적 개인정보 활용 절차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휴대전화로 분야별 정책 종합안내서 직접 발송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60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
- 5월 11일(목), 제30회 ‘가정의 달’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QYhJuExF1gZruVEBquSDANe.mogef11?mid=news405&bbtSn=709269

**“ “아이가 무슨 죄…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강제징수해야” ”**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3.05.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0500165

**“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저출산 해법 찾는다.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 방문, 이용자·아이돌보미·자녀와 소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5.1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270

##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 --- | --- | --- | --- |
| 양육비·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1인) | 2023-04-24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2인) | 2023-04-25 |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2인) | 2023-04-25 |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사실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 그 구체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시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56조 및 제58조).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등 14인) | 2023-04-20 | 현행법에서는 최저 생계 수준과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 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2005년 동 시행령 제정 이래 2011년, 2019년 단 2차례 조정되어 현재까지 185만 원 등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는 소비자물가, 표준 생계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 역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월 생계비, 급여 채권, 예금, 보험금 등의 구체적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 산정 시에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등). |
| 가족·돌봄 | 지역돌봄보장법안 (남인순 의원 등 12인) | 2023-05-11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달,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소에 의존해왔음.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내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 2023-05-04 |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0인) | 2023-04-27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 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11조).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 의원 등 14인) | 2023-04-27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0조제3항 등).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 2023-04-27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친모가 친부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을 인정한 바 있듯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지행위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2호).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 | 2023-04-25 |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 | 2023-04-20 |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
| 일가정 양립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0인) | 2023-05-09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18조의2 및 제18조의 3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12인) | 2023-05-08 | 현행법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등 13인) | 2023-05-04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청구한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18조의2제1항 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0인) | 2023-05-04 |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자체 또는 개인 사업주를 ‘사업주’로,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은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고,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39조제2항).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2인) | 2023-05-04 |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고용노동부「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34.5%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16.3%)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18.2%)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업장의 육아휴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37조).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등 12인) | 2023-04-20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 등).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2인) | 2023-04-17 |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9조 등). |

## 언론 속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보도명 | 보도일 | 내용 | 기사링크 |
| --- | --- | --- |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협업기관과 MOU체결 | 2023-05-1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강원일자리재단 강원광역새일센터와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함 |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4977&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

## 가족관련 연구 동향

| 구분 | 연구명 | 주요내용 | 참고자료 |
| --- | --- | --- | --- |
| 양육비 |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 양육비대지급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모두 간단한 신청만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여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수립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40%에 머물고 있음. 양육비 이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와 관련이 있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감치명령’ 제도 때문인데,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 우편송달 회피 방법으로 감치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부모들은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채무자를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3-5-1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981 |
| 상담 | 슈퍼비전에서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문항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 | 이 연구는 슈퍼비전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 가족상담의 핵심역량 문항을 전문가 델파이 연구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관련 국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핵심역량의 기초적 문항들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한국 가족상담 슈퍼바이저 2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최종적으로 4개 영역(‘가족 사정‘, ‘치료계획 및 사례관리‘, ‘치료적 개입‘, ‘전문 윤리‘), 10개의 하위영역, 44개의 문항으로 슈퍼비전을 위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KFC-CC) 문항이 재구성되어 제시되었음. |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Vol.31. No.1, 2023」 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4e69c95ef87a14547de9c1710b0298d |
|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의 감염병 재난 심리지원 업무 경험 | 이 연구는 코로나 19가 대유행인 2020년 상반기 동안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감염병 재난 심리 지원 사업에 투입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업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임. 자료 수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코로나 19 재난 심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신건강전문요원 12명을 대상으로 FGI 수행 결과, 코로나 19 재난 심리 지원 업무에 투입된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관련해서 14개 의미단위, 7개 주제, 3개의 범주가 추출되었음. 참여자들은 재난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감정 노동과 직무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재난 심리 지원 업무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1권 제1호, 20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28499 |
| | 가정폭력 동행상담이 역기능적 가족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이 연구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재발사고의 우려 상황에 경찰과 상담사가 현장에서 동행상담을 진행하여 역기능적 가족문화 개선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음. 연구 결과,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족 대화의 부재, 불합리한 가족규칙 및 가족건강을 억압하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음. 따라서 동행상담은 가정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가정유지의 필수요건인 가족대화, 가족규칙 및 가족건강을 회복하여 역기능적 가족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복지상담교육연구, Vol.12. No.1, 2023」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2963423a355328d5c85d2949c297615a |
| 가족 |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 본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을 OECD 국가 29개국과 비교하는 맥락에서 확인한다. 한국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고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노동 체제가 2000년대 이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는 노동 시장 결과의 평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 64호, 2023」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4489 |
| |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유아기질의 영향: 중국, 베트남, 일본 여성 비교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유아기질 및 양육스트레스가 출신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유아기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있음.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유아기질에 출신국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출신국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양육관련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27 No.4, 202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7f30295a3ba7e28b7998d826d417196 |